

학 칙

제정 : 1995.06.13	개정 : 2013.09.01	개정 : 2020.03.01
개정 : 1996.07.10	개정 : 2014.03.01	개정 : 2020.05.01
개정 : 1997.07.15	개정 : 2014.07.01	개정 : 2020.12.01
개정 : 1997.09.01	개정 : 2015.03.01	개정 : 2021.03.01
개정 : 1998.03.01	개정 : 2015.10.01	개정 : 2021.05.01
개정 : 1999.03.01	개정 : 2016.03.01	개정 : 2021.07.01
개정 : 1999.10.18	개정 : 2016.11.01	개정 : 2022.01.01
개정 : 2003.03.01	개정 : 2017.03.01	개정 : 2022.05.01
개정 : 2006.03.01	개정 : 2017.11.01	개정 : 2022.10.01
개정 : 2007.03.01	개정 : 2018.02.28	개정 : 2023.03.01
개정 : 2008.12.17	개정 : 2018.03.12	개정 : 2023.07.01
개정 : 2009.01.01	개정 : 2018.07.01	개정 : 2023.09.01
개정 : 2010.03.01	개정 : 2018.08.17	개정 : 2023.10.01
개정 : 2011.07.21	개정 : 2019.01.01	개정 : 2024.02.01
개정 : 2011.11.22	개정 : 2019.02.01	개정 : 2024.06.01
개정 : 2013.03.01	개정 : 2019.07.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대원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 직 · 학사운영 ·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3. 01.>

제1조의2(건학이념) 전문 기술 교육을 통해 각 전문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 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공헌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것이 대원대 학교의 설립정신이며 건학이념이다. <개정 2011. 11. 22.>

[본조신설 2011. 07 .21.]

제1조의3(교육목표) 국가의 교육 근본이념을 준수하며 진리·자주·봉사정신의 교훈으 로 인성, 전문성, 창의성 교육을 통한 산업체 요구 인재를 양성하는데 교육목표를 둔다. <개정 2020. 03. 01.>

[본조신설 2011. 07 .21.]

제2조(명칭) 본 대학교는 대원대학교라 한다.

<개정 1998. 05. 01., 1999. 10. 18., 2008. 12. 17., 2011. 11. 22.>

제3조(위치) 본 대학교는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에 둔다.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 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개정 2021. 07. 01.>

제4조의2(학과 및 전공 모집정지) ① 본 대학교에 설치한 학과 및 전공의 모집단위 별 입학인원이 19명 이하일 경우 다음 학년도에 해당학과 및 전공을 모집정지할 수 있으며, 그 외 요건은 학과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입학인원 기준은 정원 내 입학자로 한다.

<개정 2018. 02. 28., 2019. 07. 11., 2020. 12. 01., 2021. 03. 01.>

② 폐과된 학과의 소속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01.>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01. 19.>

제4조의3(과원 학과의 모집정원) 과원인 학과의 경우 과원 기준을 초과하는 모집정원감축은 불가하며, 과원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모집정원을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1. 03. 01.]

제4조의4(정원외 전담학과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전담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 06. 01.>

② 정원외 전담학과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고,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 정원)의 정원과는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4. 06. 01.>

③ 정원외 전담학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 06. 01.>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 03. 01.>

② 간호학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신설 2015. 03. 01.>

제6조(재학연한) 본 대학교는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9. 01. 19.>

제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나눈다. <개정 2022. 01. 01>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 <삭제 2020. 03. 01.>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 다학기제 또는 실습학기제, 계절학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01. 19., 2013. 03. 01.>

④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학기 개시일과 개강일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03. 01.>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총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2주 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07. 21>

제10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01. 01, 2024. 06. 01.>

1. <삭제 2009. 01. 19.>
2. <삭제 2009. 01. 19.>
3. <삭제 2024. 06. 01.>
4. <삭제 2024. 06. 01.>
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개정 2024. 06. 01.>
6. 근로자의 날(5월 1일) <신설 2024. 06. 01.>

② <삭제 2013. 03. 01.>

③ 총장은 비상재해 또는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07. 21., 2022. 01. 01, 2022. 05. 01>

④ 휴업일에도 필요할 때에는 수업을 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01. 01>

⑤ 방학기간은 매 학년도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01. 19., 2013. 03. 01.>

제 4 장 입 학 (편입학 · 재입학 포함)

제11조(입학 시기) 입학(재입학,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가하는 시기는 수업일수 1/4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01. 19., 2018. 02. 28., 2021. 03. 01., 2022. 01. 01>

제12조(입학 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3조(입학 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원서 및 총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입학 전형) ① 신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교 입시 전형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입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4. 07. 01.>

1.~6. <삭제 2009. 01. 09.>

② <삭제 2009. 01. 09.>

③ 외국인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은 국제교육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3. 07. 01., 2023. 10. 01.>

제14조의2(입시관리위원회) ① 입시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시전형제도에 있어 주요 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시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의3(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01.]

제15조(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교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01. 19.>

제16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허가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 01. 19.>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01. 19. 2022. 01. 01>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이중학적을 가진 자
3. 입학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제17조(2중 학적의 금지) <삭제 2009. 01. 19.>

제18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일반편입과 학사편입, 외국인유학생 특별편입으로 모집하며 모집시기, 모집정원, 지원자격, 졸업조건 등 세부사항은 편입학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03. 01., 2020. 12. 01., 2023. 07. 01.>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모집한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 특별편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01., 2023. 07. 01.>

③ <삭제 2020. 12. 01.>

제19조(전과)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모집정지된 학과의 학생이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01., 2019. 01. 01. 2022. 01. 01>

② 전입학과 및 전출학과 기준 입학정원 30%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모집정지 학과의 경우에는 입학정원과 관계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07. 21., 2016. 11. 01. 2022. 01. 01>

③ 전과 후 학과의 수업연한에 편성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수한다.

<개정 2016. 11. 01., 2023. 10. 01.>

④ 전과 전 학과의 전공필수 미취득 학점은 재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미취득 과목 삭제) <개정 2011. 01. 19., 2016. 11. 01.>

⑤ 전과 전 기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 모두 포함된다.

<개정 2013. 03. 01., 2016. 11. 01., 2018. 02. 28.>

⑥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전과는 불허한다.

<개정 2016. 11. 01., 2022. 01. 01.>

1.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유아교육과 <개정 2022. 01. 01.>

2. 수업연한이 서로 다른 학과

3.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이동

4.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단, 폐과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유사 전공심화

과정으로 전과가능)

5. 후기입학생 <개정 2021. 03. 01.>

⑦ 전과하는 경우에는 전입학과와 동일학과를 납부한다. 다만, 학칙 시행세칙 제44조에 따른 등록대체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03. 01., 2020. 12. 01.>

⑧ 제6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모집정지 학과 또는 동일 전공의 주·야간 이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01., 2023. 10. 01.>

제20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학생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간과 야간, 정원 내 외로 구분한다.

<개정 2022. 01. 01., 2023. 10. 01.>

③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된 학과의 재입학의 경우는 모집단위별 재입학 여석(입학정원의 범위 내)에 따라 총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학점 인정) ①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에 1학기 이상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는 전적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본 대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10학점 이내)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와 국내·외의 타 대학교 간에 학점 교류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3. 01.>

③ 군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학기당 3학점 이내)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01. 19.>

④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훈련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기당 6학점 이내(연12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01. 19., 2014. 07. 01.>

⑤ 국외 인턴십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01. 19., 2013. 03. 01.>

⑥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편입학자의 전적대학 및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각 호의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학점까지만 인정한다. <개정 2009. 01. 19., 2019. 01. 01., 2020. 12. 01., 2021. 03. 01., 2022. 01. 01., 2023. 07. 01.>

1. 2학년 편입자 : 33학점

2. 3학년 편입자 : 58학점

3. 4학년 편입자 : 98학점

제21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제22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01., 2018. 02. 28.>

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 횟수는 최대 2회를 초과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07. 21., 2022. 05. 01>

1. 군입대 휴학

2. 창업휴학

3. 초과학기자

4.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13. 03. 01.>

⑤ <삭제 2013. 03. 01.>

⑥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창업 휴학의 경우 일반휴학과 별도로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하다. <개정 2015. 10. 01.>

제22조의2(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총장이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해야 한다.

② 복학을 원하는 자가 복학할 수 있는 시기는 해당학기 수업일수 1/4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3. 03. 01.]

제23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01. 19.>

제24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4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3. 03. 01.>

3. <삭제 2013. 03. 01.>
4.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이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제24조의2(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학과에서 졸업하지 못하였거나, 휴학 중이었던 자는 변경 조정된 학과 및 전공의 해당 학년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 03. 01.]

제 6 장 교과 및 수업

- 제2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구분하며, 전공교과목은 실험·실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1.>
- ② 전공교과목은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0. 01.>
- ③ 현장실습 의무 대상과는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10. 01., 2017. 03. 01., 2022. 10. 01.>
- ④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01.>
- ⑤ 인증 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05. 01.>

- 제26조(특별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03. 01.>
- ② 특별과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03. 01.>
- ④ 특별과정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03. 01.>
1. 교육과정 연계 운영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3. 교육과정 공동운영
 4.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운영 <개정 2017. 03. 01.>

제26조의2(교육과정 연계 운영) ①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계고등학교,

대학교,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 03. 01.>

제26조의3(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① 본 대학교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1년 또는 2년 과정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07. 01.>

② 학기별 이수학점은 9학점 이상 20학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8. 02. 28.>

③ 전문대학교 이수 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01. 01.>

1. 전문대학교 2년제 졸업자 : 75학점 인정

2. 전문대학교 3년제 졸업자 : 110학점 인정

3. 전문대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 학력소지자 : 2학년, 3학년 수료에 해당하는 자는 1호, 2호와 동등하게 인정한다.

④ <삭제 2013. 03. 01.>

제26조의4(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외국대학교와의 협약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약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복수(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 03. 01.>

제26조의5(사회맞춤형교육과정운영) ①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사회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맞춤형 학과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03. 01.]

제27조(교과목 이수 단위) ① 교과목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습·실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07. 21., 2015. 10. 01., 2019. 01. 01.>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공 및 교양교과목의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1. 01., 2022. 05. 01.>

1. 2년제 학과 75학점.

2. 3년제 학과 110학점.

3. 4년제 학과 130학점. <개정 2014. 03. 01., 2015. 03. 01., 2015. 10. 01.>

③ 학생은 매 학기 13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3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이하 24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01., 2016. 11. 01., 2018. 08. 17., 2019. 01. 01.>

④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⑤ 제25조 제3항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2학점까지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03. 01.>

⑥ 간호학과외의 경우 임상실습 교과목은 최소 22학점 이상 이수하며 시뮬레이션 실습을 임상실습의 일부로 운영 시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편람기준을 따른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습교과목 학점 당 이수시간은 실습실실습은 30시간을 1학점으로 하고, 임상실습은 45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신설 2023. 09. 01.><개정 2024. 02. 01.>

제27조의2(시간제 학생 등록제의 운영) ① 본 대학교에서는 시간제 학생 등록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단, 보건·간호계열 및 유아교육과는 제외)

② 시간제 학생의 모집은 학기별로 실시하며, 모집인원은 당해년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하되 학과별 입학정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간제 학생의 교육과정 및 수업, 성적평가 등은 전일제 학생과 통합운영하되 학적관리 및 제 증명 발급 등은 별도로 한다.

④ 시간제 학생의 수업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학기별 신청 가능 학점은 전일제 학생 취득 기준 학점의 1/2 이하로 하되 연간 2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간제 학생의 전일제 학생으로서의 신분 변경은 전일제 학생의 편입학 절차에 따른다.

⑥ 시간제 학생에 대한 선발방법 및 학위수여 조건, 등록금 등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의3(학점은행제) 본 대학교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른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수업) ① 매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8:00~23:0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8. 02. 28., 2020. 05. 01.>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야외수업, 계절수업, 현장수업(실습), 방송·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01. 19., 2013. 03. 01., 2015. 03. 01., 2019. 02. 01., 2021. 03. 01., 2023. 03. 01.>

③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 01. 19.>

④ 수업관리의 엄정성을 위하여 불특정한 기간에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07. 01.>

⑤ 국가적 재난 및 학생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01.>

제28조의2(원격수업) ①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01.>

②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격수업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03. 01., 2023. 10. 01.>

제28조의3(공개강좌) 본 대학교 학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강좌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01. 19.]

제28조의4(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기간(변경기간을 포함한다.)내에 교육과정과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01. 19.]

제28조의5(교수시간)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를 기준으로 매주 12시간을 책임시간으로 하되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매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간호학과의 경우 학칙 제27조 제6항을 기준으로 전임교원 및 임상실습지도교원의 실습교과목 인정 1시수는 실습지도시간 15시간으로 한다.<개정 2013. 09. 01., 2019. 01. 01., 2024. 02. 01.>
[본조신설 2009. 01. 19.]

제28조의6(수업컨설팅) ① 교수기술개선 및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교수자역량강화 및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수업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업컨설팅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본조신설 2019. 01. 01.]

제28조의7(타교생의 수학) 국내·외의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4. 02. 01.]

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29조(평가 시험) ① 평가는 직무수행능력평가로 실시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03. 01., 2015. 10. 01., 2016. 03. 01., 2021. 03. 01.>

②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⑤ NCS기반 교과목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능력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01., 개정 2016. 03. 01.>

제30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성적, 직무수행능력평가 성적, 과제 등을 반영하여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01., 2015. 10. 01., 2021. 03. 01.>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교과목의 성적이 D⁰ 이상이면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실험·현장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3. 03. 01., 2021. 03. 01., 2022. 01. 01>

등 급	배 점	평 점
A+	95이상 100	4.5
A0	90이상 95미만	4.0
B+	85이상 90미만	3.5
B0	80이상 85미만	3.0
C+	75이상 80미만	2.5
C0	70이상 75미만	2.0
D+	65이상 70미만	1.5
D0	60이상 65미만	1.0
F	60미만	미취득
P		불계

③ 추가시험 성적은 최대 B⁺등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03. 01., 2023. 10. 01.>

④ <삭제 2016. 11. 01.>

⑤ <삭제 2013. 03. 01.>

⑥ 성적평균평점 환산은 [별표 제3호]과 같다.

<개정 2018. 02. 28., 2021. 07. 01>

제31조 <삭제 2013. 03. 01.>

제32조(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03. 01., 2022. 01. 01>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3.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

제33조(학사경고) 당해 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 또는 매학기 취득학점이 12 학점(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은 8학점)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경고와 아울러 보호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3. 01., 2014. 07. 01., 2016. 03. 01., 2016. 11. 01., 2018. 02. 28., 2023. 10. 01.>

제34조(졸업 및 수료) ①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하며, 학과별 교육과정에 포함된 직무분야(능력단위)의 직무수행능력성취도를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총장이 직무수행능력인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01., 2015. 10. 01., 2016. 03. 01., 2021. 07. 01.>

②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2호 서식의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1학년	33	30	28
2학년	75	66	58
3학년		110	100
4학년			130

<개정 2015. 03. 01., 2019. 01. 01., 2019. 02. 01., 2021. 03. 01.>

③ 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④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03. 01., 2023. 10. 01.>

⑤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필요시 졸업유예를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01., 2020. 12. 01.>

⑥ 간호학과는 인증 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졸업시험 등)이 충족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05. 01., 2021. 07. 01., 2023. 09. 01.>

제35조(유급) 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유급이 될 수 있으며, 그 운영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장 학생활동

제36조(학생회 조직)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37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0. 01.>

제39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 거부, 불온 게시물의 무단부착, 마이크 사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40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학년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킨다.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고 개별상담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는 등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1. 무계출결석자(1주)
2. 학사경고자
3. 재수강자
4. 각종 심리검사에서 위험군 학생
5. 학칙위반자 <개정 2018. 07. 01., 2019. 07. 11., 2022. 01. 01.>

② 학생회를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42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처벌)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 9 장 규율과 상벌

제44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5조(결석) 학생이 「학칙시행세칙」 제23조 외 사유로 수업일수 1/4 이상 결석 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진료기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과에 제출하면 수업일수 1/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03. 01.>

제46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 07. 21.>

1.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10 장 등 록 금

제48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수업료,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1. 19., 2022. 01. 01., 2023. 10. 01.>

② <삭제 2009. 01. 19.>

③ 납부한 등록금은 착오가 발견되지 않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09. 01. 19., 2022. 05. 01.>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개정 2022. 05. 01.>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③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항 5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22. 05. 01., 2023. 10. 01.>

④ 등록금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 07. 01. 2022. 01. 01.>

2. 해당 학기 개시일의 다음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4. 07. 01., 2022. 01. 01.>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생 또는 복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제2호의 표에 의하여 반환하며, 반환사유 발생일을 휴학생은 휴학학기의 휴학일로 하고 복학생은 휴학학기의 휴학일과 상관없이 자퇴학기 자퇴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반환한다. 다만, 학칙 시행세칙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모집정지 학과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자퇴 등 학적변동을 하는 경우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01. 01., 2022. 01. 01, 2022. 05. 01.>

⑤ 총장은 생활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이 등록금 납부연기 신청이나 분할납부를 원할 경우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강일로부터 3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납기간에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09. 01. 19., 2022. 05. 01.>

제48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07. 21.]

제49조(등록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01. 19.>

제 11 장 장 학 금

제50조(장학금)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와,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01.>

1.~2. <삭제 2017. 11. 01.>

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7. 11. 01.>

③ 장학금 지급에 관련한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장학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11. 01.>

제 12 장 교 수 회

제51조(구성) 본 대학교에는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52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01. 19.>

1.~5. <삭제 2009. 01. 19.>

제52조의2(각종위원회) ① 총장은 대학교의 교육, 학사관련 업무 등 원만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07. 01., 2023. 10. 01.>

②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01. 19.]

제 13 장 교무위원회

제53조(교무위원회) 본 대학교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54조(교무위원회의 구성)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교무처장, 사무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9. 01. 19., 2011. 07. 21., 2014. 07. 01., 2015. 03. 01., 2018. 08. 17., 2020. 03. 01., 2023. 10. 01.>

② <삭제 2019. 01. 01.>

③ <삭제 2019. 01. 01.>

제 14 장 직 제

제55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전임교원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 <개정 2009. 01.19., 2013. 03. 01., 2019. 07. 11.>

② 총장은 전임교원 외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01. 19., 2013. 03. 01., 2019. 07. 11.>

제55조의2(강사)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07. 11.]

제56조(직제) ① 본 대학교 직제는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03. 01., 2014. 07. 01., 2020. 03. 01., 2022. 10. 01., 2023. 10. 01.>

② 각 처에 처장을 보하고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정리하고 처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삭제 2015. 03. 01.>

- ④ 행정 조직별 세부사항은 직제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03. 01., 2014. 07. 01.>

제 15 장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제57조(부속기관 및 부설기관) <삭제 2023. 10. 01.>

제 16 장 산학협력기관

제58조(산학협력단) ① 본교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교원 또는 참여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단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09. 01.>

③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부설연구소는 직제 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4. 07. 01., 2023. 10. 01.>

1. <삭제 2023. 10. 01.>

2. <삭제 2017. 11. 01.>

④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의2(학교기업의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03. 01., 2019. 07. 11., 2022. 01. 01.>

② 학교기업에서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03. 01.>

③ <삭제 2013. 03. 01.>

제58조의3(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20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1개 학기당 인정 학점은 10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당 30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01. 19.]

제58조의4(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01. 19.]

제 17 장 보 칙

제59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01.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 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01. 19.>

제61조(학칙개정) 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신설 2009. 01. 19.><개정 2022. 01. 01.>

② 학칙 개정안의 공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01. 19., 2016. 11. 01., 2022. 01. 01.>

③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01. 19., 2022. 01. 01.>

④ 당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1. 19., 2022. 01. 01.>

⑤ 사전예고 절차를 걸친 학칙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09. 01. 19., 2014. 07. 01., 2022. 01. 01.>

제62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본 대학교 구성원의 성적 자율성 확보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 01. 19.>

제63조(대학평의원회) ① 대학교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개정 2009. 01. 19.>

②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은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발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01. 19.>

③ 대학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9. 01. 19., 2023. 03. 01.>

1.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 대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대학교 헌장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대학평의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01. 19.>

제64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교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09. 22.>

제65조(계약에 의한 학과설치) ① 본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21.>

② 계약학과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 학생의 정원, 운영경비, 납입금, 수업운영, 설치,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는 개설하고자 할 때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07. 21.>

제66조(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따라 장애인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지원센터(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 지정 등)를 설치·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 07. 21.>

제67조(도서관) <삭제 2023. 10. 01.>

제68조(인권침해 행위 처벌 강화) 대학 내 모든 집단활동 행사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집단활동에 대한 운영중지·폐쇄·재정지원 중단 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행위자 학생은 학생상벌규정에 따르며, 교원은 정관에 따른다.

부 칙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6학년도 졸업자는 졸업이전에 학칙개정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원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대원공과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학칙 제9조 ①항은 199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학칙 제27조 5항의 현장실습 이수 학점은 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원공과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대원과학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과, 전자계산과, 전자통신과, 사무자동화과, 메이크업과, 의상디자인과, 세무회계과, 유통경영과, 관광영어통역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전산정보처리전공, 컴퓨터정보통신전공, 전자정보통신과, 인터넷정보관리계열, 메이크업코디과, 패션디자인계열, 경영정보계열, 관광통역과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적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조정된 계열 혹은 학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교수는 개편된 계열 혹은 학과의 소속으로 보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적
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변경 조정된
계열 혹은 학과의 해당학년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교수는 개편된 계열 혹은 학과의 소속으로 보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수업연한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수업연한 연장 후 해당학과에 복학하는 학생
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또는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원과학대학 재적
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대원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계열 및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 또는 변경된 계열/학과/전공 소속으로 한다. 다만 학과 폐지 등의 경우는 복학시 유사계열(학과)로 전과하되 관련법규에 의해 제한되는 학과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1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원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대원대학교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 칙

이 학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과 4년제 인가에 따른 정원) 간호과의 4년제 인가에 따른 학년별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학년도	학년별 학생정원(명)				편제정원(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015	90	120	120	30	360
2016	90	90	120	60	360
2017	90	90	90	90	360
2018	90	90	90	90	360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졸업학점기준 및 학점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졸업에 필요한 졸업학점 및 매학기 이수학점에 대한 변경된 기준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의 경우, 다음의 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학제	졸업학점	이수학점(학기)
2년제	80	13~24학점
3년제	120	
4년제	140	

제3조(수료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삭제: 2020.03.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34조 2항은 2018학년도 수료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학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칙 제3조 수료학점에 관한 경과조치는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수업)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20년 이전 신입생의 경우에도 제34조 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22조 3항은 2022학년도 2학기 휴학대상자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해제) 부칙 2019년 1월 1일자 졸업학점기준 및 학점인정기준 개정
에 따른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학점기준 및 학점인정기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

제 호

학 위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대원대학교총장 000

학위번호 : 대원-

【 별지 제2호 】

대원 - 호

수 료 증 명 서

학 번 :

성 명 :

생년월일 :

학 과 :

입학일자 :

취득학점 :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과 학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원대학교총장 (직인)

【 별표 제1호 】

1.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2021~2025학년도)

가. 전문학사 및 학사 과정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공학	전기전자과	50	40	40	40	40
	국방통신부사관과	40	30			
	철도건설과	35	30			
	철도건설과(야간)	20	25	35	35	35
	멀티미디어과	30	35			
	건축인테리어과	30				
	소방안전관리과	30				
자연과학	간호학과(4년제)	112	131	144	164	164
	물리치료과(3년제)	70	70	70	70	70
	방사선과(3년제)	40	40	40	40	40
	응급구조과(3년제)	60	60	60	60	60
	치위생과(3년제)	55	58	58	30	30
	치위생과(3년제, 야간)				28	28
	뷰티과	30	35			
	뷰티과(야간)			35	35	35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30	30			
	운동재활과	40				
	재활운동과		30	30	30	30
	바이오메디컬과	25	30			
호텔조리제빵과	38	30				
인문사회	유아교육과(3년제)	48	35	35	35	35
	호텔카지노경영과	25				
	호텔관광경영과		30	30	30	30
	항공서비스과	25	30			
	사회복지과	40	30	30	30	30
	사회복지과(야간)	60	60	65	65	65
	철도운전경영과	25				
	청소년지도상담과	25				
	경찰경호행정과	25	30			
문헌정보과(야간)			30	30	30	
입학정원 계(A)	1,008	889	702	722	722	
유보인원 계(B)			55	15	15	
합계(C=A+B)	1,008	889	757	737	737	

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산업체 경력 없음)

계열	설치학과	입학정원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공학	철도건설공학과(야간)	20	20	20	20	20
자연과학	방사선학과(야간)	15	15	15	15	15
	응급구조학과(야간)	20	20	20	20	20
	뷰티학과(야간)			10	10	10
인문사회	유아교육학과(야간)				10	10
사회	사회복지학과(야간)	20	20	20	20	20
	입학정원 계	75	75	85	95	95

다. 정원외 전담학과 과정

1) 재외국인 및 외국인 전형 전담학과

구분	설치학과	입학정원		
		2024학년도	2025학년도	
2년제	전기전자과	100	제한없음	
	재활운동과	3	제한없음	
	호텔관광경영과	100	제한없음	
	K-글로벌학부	컴퓨터전공	-	제한없음
		경영전공	-	제한없음
		한국어전공	-	제한없음
		조리전공	-	제한없음
		뷰티전공	-	제한없음
	스마트전자기계전공	-	제한없음	
3년제	응급구조과	3	제한없음	
4년제	간호학과	-	-	

【 별표 제2호 】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종별(2021~2025학년도)

계열	해 당 학 과	종 별	비 고	
공 학	전기전자과	공업전문학사		
	국방통신부서관과			
	철도건설과			
	멀티미디어과			
	건축인테리어과			
	소방안전관리과			
자 연 과 학	간호학과(4년제)	간호학사		
	물리치료과(3년제)	보건전문학사		
	방사선과(3년제)			
	응급구조과(3년제)			
	치위생과(3년제)	치위생전문학사		
	뷰티과	뷰티전문학사		
	보건의료행정과	보건전문학사	2년제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보건전문학사 (보건의료정보관리전공)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 한함(3년제)	
	재활운동과	운동재활전문학사	재활운동전문학사	2022학년도부터
	바이오메디컬과	이학전문학사		
호텔조리제빵과	가정전문학사			
인 문 사 회	유아교육과(3년제)	유아교육전문학사		
	호텔관광경영과	호텔카지노경영전문학사	2022학년도부터	
		호텔관광경영전문학사		
	항공서비스과	항공서비스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철도운전경영과	철도운전경영전문학사		
	청소년지도상담과	청소년지도상담전문학사		
경찰경호행정과	경찰경호행정전문학사			

구 분	해 당 학 과	종 별	비 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철도건설공학과	공학사	
	방사선학과	방사선학사	
	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사	
	뷰티학과	미용학사	2023학년도부터
	유아교육학과	유아교육학사	2024학년도부터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 재외국인 및 외국인 전형 전담학과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종별(2024학년도부터)

구 분	해 당 학 과	종 별	비 고	
2년제	전기전자과	공업전문학사		
	재활운동과	재활운동전문학사		
	호텔관광경영과	호텔관광경영전문학사		
	K-글로벌학부	스마트전자기계전공	공업전문학사	
		컴퓨터전공	공업전문학사	
		뷰티전공	뷰티전문학사	
		조리전공	가정전문학사	
		경영전공	경영전문학사	
	한국어전공	한국어전문학사		
3년제	응급구조과(3년제)	보건전문학사		
4년제	간호학과(4년제)	간호학사		

